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2. 14.(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1차, 제6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22-63-23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2022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해 [별지1]과 같이 재허가 한다. <나> 위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은 [별지2] 기재와 같이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재허가 신청 방송국입니다. 도로교통공단 12개 FM방송국, OBS경인DTV방송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경과입니다. ‘19년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금년 5월 세부계획에 따라 신청서 접수, 시청자 의견청취,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운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5>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6>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2개 사업자 13개 방송국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FM방송국은 831점에서 860점을, OBS경인DTV방송국은 779.8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청취자 행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는 매출액·당기순이익 증가 등 재무적 안정성 증대, 직전 재허가 조건의 이행 완료, 지역민이 참여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지역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감사 제도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 주요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20년 이후 방송사 공통 조건으로 부가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변경 시 방통위 승인 절차,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관련 제출을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별 조건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보도를 제외하고, OBS의 경우에는 직전 재허가 대비 경영여건이 개선되었으나 불확실한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비 투자, 유동성 위험관리 등의 조건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및 감사제도 강화 등 지역민방 공통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로컬 편성 지속 확대 및 청취 행태조사 실시, OBS의 경우에는 방송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교육 방안 마련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내용을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심사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 검토의견입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2개사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유효기간은 사전 기본계획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이상이므로 13개 방송국 모두 5년으로 부여하고,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과 같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허가 조건은 기존의 공통조건이었던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에 동일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사 개별 조건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보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OBS는 직전 재허가에 비하여 경영지표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향후 안정적인 방송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작비 투자계획 이행 및 유동성 위험관리 등에 대한 재허가조건을 유지하고, 민영방송사업자로서 방송운영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공통 조건(최대주주 보도 현황 제출 및 감사제도 강화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번 재허가에서는 재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부과되었던 조건 중에서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 사항(재난방송 매뉴얼, 편성규약), 기존 조건이행이 완료된 사항(제작비 미이행, 경영정상화, 실적제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의 이행 조건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자체제작 편성계획) 등 이 3개 유형에 대해서는 조건에서 제외하였으며 매년, 매반기, 매분기 등 상이했던 이행실적 제출 기한을 매년 단일화하여 재허가 조건으로 인한 방송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이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재허가 심사 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안형환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재허가 때보다 재정능력 및 지역성 개선 등으로 평가점수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라디오방송, 지상파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운영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시청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청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재허가 방송사업자들은 위원회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선 이번 심사를 맡은 안형환 부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결과 TBN교통방송은 교통과 재난정보 제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라디오방송을 비교적 잘 제작·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청취자 의견수렴 등 청취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경인TV는 그간의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 경영에 관련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는 그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협찬매출 등의 증가로 최근 3년간 방송 수익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작년에는 41억원의 당기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본잠식률은 여전히 높아서 2021년도 91%에 달합니다. 지속적인 유동성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OBS가 지난번 재허가 조건 중 본사 이전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전할 건물은 인천 계양에 마련되어 있는데 건물 내부의 방송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전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향후 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되는 만큼 OBS는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점수도 높은 편이고 사무처 원안대로 2개 방송사 모두 허가유효기간 5년의 재허가에 동의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방통위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먼저 이번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안형환 부위원장님과 사무처 노력에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청의 수사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2020년 종편 심사위원에 대해 뒤늦게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재허가 심사에서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OBS가 직전 재허가 사업계획,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는 고무적입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조건과 권고사항 등이 다소 과하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OBS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OTT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의 설립 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을 제작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OBS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여러 조건들이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사옥 이전 등의

문제가 남았지만 방통위에서 행정지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2022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해서 안형환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심사를 실무적으로 지원한 사무처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점이 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사무처는 방송사업자가 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기본적인 책무를 잘 이행하도록 사업자의 자구노력 유도과 이행 점검 등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2-63-23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22년 11월 21일에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2개 사업자에 대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재허가 심사를 하였고, 방통위는 11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허가유효기간을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7년,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은 부채비율 등을 반영하여 5년으로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니다.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개요입니다. 과기정통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하여,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법률·회계 분야 등 총 3인으로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과기정통부의 허가조건(안)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부합하는지 중점 검토하고, 지역채널 운영 및 투자,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표 및 편성책임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서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과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직접 제작비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차입금 등을 포함한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직접 제작비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前 최대주주 횡령·배임 관련 불법행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지역방송사로서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채널 투자 확대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부채비율 감소에 대한 강제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역방송사로의 공적책무 수행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다.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22-63-236)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의결 다>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2021년도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0.36으로 하며, 2021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구독률 자료를 접수하였고, 시청점유율을 산정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절차입니다. 방송사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전체, 주식·지분을 보유한 방송사의 주식·지분만큼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체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매체교환율입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비율로 시사정보 이용률, 이용시간 등 이용자 조사와 신문과 TV의 광고매출액비인 시장 조사값을 평균한 값입니다. '21년도 매체교환율은 이용자 조사 0.3과 시장조사값 0.42를 산술평균한 0.3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내역입니다. 환산대상은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4개 일간신문으로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매체교환율 (0.36)을 곱하고, 방송 시청률의 합(26.473%)으로 나누어 환산 시청점유율을 구하였습니다. 환산결과는 조선일보 계열 4.627%, 중앙일보 계열 2.648%, 동아일보 계열 2.236%, 매일경제 0.78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입니다. 294개 방송사업자 428개 채널에 대해 '21년 한 해 동안 측정된 시청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입니다.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22.555%, (주)문화방송 9.868%, (주)에스비에스 7.738%, 한국교육방송공사 1.792%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보도PP 시청점유율은 (주)조선방송 10.677%, 제이티비씨(주) 7.152%, (주)채널에이 4.713%, (주)매일방송 4.108%, (주)와이티엔 3.267%, (주)연합뉴스티브이 3.009%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문PP의 시청점유율은 (주)씨제이이엔엠 11.523%, (주)엘지헬로 비전 0.069%, (주)딜라이브 0.009%, (주)씨엠비 0.007%, (주)현대HCN 2.556%, 에스케이브로드 밴드(주) 0.337%,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2.624%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값은 각각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방송법」 제169조의2제1항에 명시된 시청점유율 상한을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시청점유율을 산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조사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경향으로는 TV에 대비하여 신문의 영향력을 비교한 이른바 매체교환율이 최근 3년간 2019년도 41%에서 '20년 39%, '21년 36%로 일간신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의 시청점유율도 46%에서 42%, 41%로, 특히 지상파 4사는. 그리고 종편4사도 '19년 29.404%에서 '20년 28.833%, '21년 26.65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씨제이이엔엠의 시청점유율이 '20년 11.368%에서 '21년 11.523%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상파·종편PP와 일반PP들의 격차가 다소 좁혀짐으로써 여론 다양성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점유율 산정결과는 대상사업자들이 모두 예년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해 이런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점유율 결과는 국가가 발표한 객관적인 지표이며, 여론 다양성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점유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스마트폰 선택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 및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스마트폰 선택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 및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재 앱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성 및 삭제 제한 관련 세부기준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선택재 앱 금지행위 관련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선택재 앱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삭제 제한 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재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선택재 앱 삭제 제한 관련 점검 주요내용입니다. 점검 개요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재 앱의 삭제 제한 행위 및 삭제에 준하는 조치에 대해 갤럭시와 아이폰 등 주요 단말기 5종의 선택재 앱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 및 점검결과입니다. 선택재 앱은 단말기별로 평균 75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삭제가 제한되는 앱은 총 63개로 사업자별로 평균 10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공개앱과 표시되지 않는 비공개앱을 포함한 결과이고, 통신사의 경우 주로 고객센터·스마트서비스 앱, 제조사는 전화·카메라·디바이스 관리 앱 등을 선택재하고 있으며,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구글의 경우 선택재 앱 대부분이 삭제 또는 비활성화가 가능했습니다. 전문가 검토결과입니다. 삭제 제한 앱에 대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1, 2차 검토결과 4개 앱, 즉 삼성전자의 AR존, AR두들, 날씨, Samsung Visit In 앱은 비필수앱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KT고객 특화서비스의 경우는 앱이 아닌 메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전문가 검토 내용은 아래 <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자 의견입니다.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4개 앱 중 2개 앱 Samsung Visit In, AR두들에 대해 현행 전략단말인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나머지 2개 앱인 AR존과 날씨는 차기 전략 단말인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 관련 고려사항과 조치방안입니다. 조치방안은 선택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택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추세인 점, 그리고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앱에 대해 유예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재 앱 관련 세부기준 마련입니다. 삭제 편의성 등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선택재 앱 규제가 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의성 있게 보완·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재 앱의 필수성과 삭제 제한 및 삭제에 준하는 조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안내서 형식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안내서를 적용한 후 규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세부기준을 관련 법령과 고시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주요내용입니다. 적용 대상 및 정의입니다. 적용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 스마트폰에 앱을 선택

재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필수앱은 일반 이용자의 인식에 따른 스마트폰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운용에 요구되는 앱으로 이용자 임의 삭제 시 선택재앱제공자의 주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앱 구동이 저해되는 경우나 높은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요구되어 이용자 임의 삭제 시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앱 마켓에서 재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재설치 시 시스템 연계 기능 구동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 삭제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실행 또는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치된 앱의 아이콘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데이터가 램(RAM)에서 삭제되고, 이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성 판단 기준은 선택재 의도나 목적, 유사앱의 존재·제한설정 여부 등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와 다른 앱 제공자와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저해·침해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삭제 제한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기능을 구현하거나 이용자의 불이익을 과장하여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치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련 행정 사항입니다. 안내서는 선택재 앱 금지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자 등에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울러 삭제 제한 선택재 앱에 대한 불편 사항을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신고 창고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행정지도와 안내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사업자들이 지금 이 지적사항들을 다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런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은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예, 삭제 제한되는 부분을 삭제 가능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017년 스마트폰 선택재 앱 관련 시행령 제정 이후 방통위가 매년 이에 대한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결과 삼성전자가 설치한 일부 앱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행히 삼성 측에서도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선택재된 앱이 많아지고 삭제도 쉽지 않을 경우 단말기 성능 저하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후에라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내서를 발간하는 점도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안내서의 내용들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스마트폰 선택재 앱은 데이터와 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규 앱 개발자의 공정경쟁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용량 증가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인 점과 사업자가 시정 중인 점, 제재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보다는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행정지도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마련은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무처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 안형환 부위원장

- 선택재 앱 삭제 제한 관련 금지행위가 이미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스마트폰에는 이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많은 선택재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필수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거나 금지행위 판단에 있어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까 관련 제재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조치와 안내서 제정·배포를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의사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2022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처는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 관련해서 기 보고가 됐고, 이것이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올해 안에 제기된 사안 중 혹시 검토가 안 됐거나 논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또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무처에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4분 폐회 】